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저광물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088호)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089호)
-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4
2. 개정안 검토	6
(1) 개정안의 주요내용	6
(2) 개정안 검토	11

I. 제안경위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 안 자 : 박성민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9. 19.
3. 회부연월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외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안)

현행법은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질이 유사한 해저광물자원 채취(採取)는 어로제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¹⁾ 부과되는 목적세로 특별시·광역시·도세임.

지역자원시설세는 ① 특정자원분, ② 특정시설분, ③ 소방분으로 구분되며, ① 특정자원분은 다시 i) 발전용수분, ii) 지하수분, iii) 지하자원분으로, ② 특정시설분은 iv) 컨테이너분 v) 원자력발전분, vi) 화력발전분으로 구분됨.

[지역자원시설세 구분]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지하수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이 중 ① 특정자원분 및 ② 특정시설분은 1992년 지역개발세(발전
용수분·지하수분·지하자원분·컨테이너분)로 신설된 후 2005년 원자력
발전분, 2011년 화력발전분이 추가되었고, ③ 소방분은 1961년 공동
시설세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현재와 같이 지역자원
시설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개정안 검토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해저광물자원(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를 채취하는 자(납세의무자)가 채취권 설정구역 및 최초반입 장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납세지)에게 채취된 광물가액의 1%(과세표준 및 표준세율)를 납세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며(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2조(과세대상) ²⁾ ① (생략)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 다.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해저광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해저광물자원”이라 한다)</u>
제143조(납세의무자) ³⁾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143조(납세의무자)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採取)하는 자</u>
제144조(납세지) ⁴⁾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	제144조(납세지) ----- -----

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략) <u><신설></u> 2. 3.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⁵⁾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② ~ ⑤ (생략)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이 설정된 구역과 채취한 해저광물 자원이 최초로 반입되는 장소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재지</u> 2. 3. (현행과 같음)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4. 해저광물자원: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u>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취하는 해저광물자원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
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3)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4)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
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나.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다.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납세지
 -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
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5) 「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때로 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제1항제1호제10호라목 신설).

현행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6)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 9. (생략)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 사. (생략) 11.·12. (생략) ②·③ (생략)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採取)하는 때 마. ~ 아. (현행 라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표 생략)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3. 삭제
 -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6) 「지방세기본법」
-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사.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2) 개정안 검토

“해저광물자원”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⁷⁾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석유·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의미함. 개정안은 이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첫째, 지역자원시설세는 부정적 외부효과(특정인의 행위가 제3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이를 감소시키거나 피해를 보전(외부효과의 내부화)하는 기능을 가지며, 특히 특정자원분은 해당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부존 자원 감소 등을 상쇄하는 기능을 가지는데,

해저광물자원의 채취 또한 환경오염(석유유출·화재발생 등) 및 부존 자원 감소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현행법은 이미 “지하(광물)자원”⁸⁾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존 장소의 차이 외에 특성상 유사성을 가지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체계의 형평성·일관성 상 타당할 것으로 보임.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세부내역]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2023년 수입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10m³당 2원	82억원
지하수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m³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m³당 100원 그 밖의 지하수 m³당 20원	72억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44억원

다만, 행정안전부는 지하자원과의 형평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지역주민 피해 보전 등을 고려할 때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직 해저광물자원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거나 그 채취가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으로서 채취시 부정적 외부효과 및 경제적 손실 등을 측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해저광물자원의 개발 추이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세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⁹⁾

문 의 처

02)6788-5333

9) 이는 원칙적으로 타당한 입장으로 보이나,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이 가시화된 후 정책연구에 착수 하게 되면 제도설계가 지연되어 적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관련 연구를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